

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3. 4. 8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4. 10.

다. 상정일자 : 2003. 4. 12.

(제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 14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수승대 관광지내 “거창신씨요수종중” 소유의 토지 13필지, 100,098m²와 구연서원 및 관련시설물(13건)이 관광객에게 개방 이용되고

있어 현재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이하로 보조하고 있으나,

○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지급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관람료 수입금액중 100분의 20이하 보조금 ⇒ 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현행 관광지내 위치해 있는 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, 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군수가 매년 행사시 관광지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야외극장 무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
 - 시설물 보존관리 경비 명목으로 수입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보조금 ⇒ 사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(즉, 임차료) 지급으로 개정
- 개정 조례안에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으며, 그외 임차계약에 의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조선제 위원 외 4인 수정안 발의

제12조2항 중 “군수는 관광지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,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.”를 “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등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.” 로 수정발의

-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2조(수입금의 사용)</p> <p>① 이 조례에 정한 관람료등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② <u>군수는 관광지구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,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다만,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2조(수입금의 사용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람료 등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관광지내 위치해 있는 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, 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 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 략